

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13.10.16.]
[대통령령 제24800호, 2013.10.16. 일부개정]

【제 · 개정이유】

[일부개정]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의 영업범위는 식육 또는 포장육의 판매로 한정되어 있어 식육판매업자가 양념육,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,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 번의 신고로 식육 등의 판매와 식육가공품의 가공·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한편, 축산물운반업·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업·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【제 · 개정문】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3년 10월 16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

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유정복

◆ 대통령령 제24800호

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7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

제21조제7호가목 단서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식육즉석판매가공업: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(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,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)하면서 식육가공품(통조림·병조림은 제외한다)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

» 축산법령

별표 4 제2호아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·운반·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	법 제47조 제2항제1호	
1) 도축업의 영업자		300만원
2)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		200만원
3)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		200만원
4)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		100만원
5)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		100만원
차.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2항제3호	3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 조치)

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 판매업의 신고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다만, 이 영 시행 당시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또는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

제외한다.

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(「식품위생법」을 포함한다)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제4호 중 “하는 경우”를 “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”로 한다.